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996. 4. 20.

교육사회위원회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6년 4월 9일
- 회부일자 : 1996년 4월 9일

3. 제 안 이 유

토양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시행에 따라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과 소관사무 일부를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4. 주 요 골 자

- 토양오염 물질의 사용량 증가와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 요인이 점증되고 있어
- 토양오염의 효율적·사전예방관리와 오염토양에 대한 대책강구 및 개선사업 추진 등 토양환경보전 업무를 신속하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적극추진하기 위하여
-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신고, 대집행 및 과태료 부과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임

5. 검 토 보 고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토양환경보전법(법률 제4906호 '95. 1. 5),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148485호 '95. 12. 29)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6호 '96. 1.4) 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권한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을 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관리과소관 사무에 있어서 조례안 별표 1중 소관 제19호 내지 32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환경관리과소관 사무를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타당 하다고 사료되나, 위임사무에 대한 수임능력이 고려되어야 할것 임.

6. 개정 조례안 : 별 첨